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① 통신방식												
② 송신부	(1) 송신장치 구분						(2) 정격출력					
	(3) 전파형식과 점유주파수대폭						(4) 발사가능 전파의 주파수 범위					
	(5) 발진방식				(6) 발진주파수				(7) 체배(遞倍) 방식			
	(8) 변조방식				(9) 최대 변조도		(10) 최대 주파수편이		(11) 최대 전력			
	(12) 최고 변조주파수 또는 최고 통신속도											
	전력증폭기		(13) 명칭		(14) 개수		(15) 양극		(16) 비고			
							입력 전압					
	(17) 제조자명		(18) 기기의 명칭(모델명)				(19) 기기일련번호			(20) 비고		
	③ 수신부	(1) 수신장치 구분										
(2) 수신방식												
(3) 수신 가능한 주파수 범위												
(4) 국부발진 주파수												
(5) 중간주파수												
(6) 중간주파수 증폭부 통과 대역폭						○ 6dB점의 대역폭 ○ 6dB(또는 -70dB)점의 대역폭						
(7) 제조자명						(8) 기기의 형식 또는 명칭		(9) 기기일련번호		(10) 잡음 온도		
④ 안테나계	안테나	(1) 형식	(2) 편파면	(3) 지향각	(4) 전력반치비임폭	(5) 주파수 범위	(6) 이득	(7) 높이		(8) 조수 또는 기수	(9) 운용각	(10) 길이 또는 지름(m)
	송신							해발고	지상고			
	수신											

	급전선	(11) 종별	(12) 선종	(13) 길이(m)	(14) 임피던스	(15) 손실	
	송신						
	수신						
	안테나설치대 또는 급전선주	(16) 종류	(17) 높이(m)	(18) 기부 지상고(m)	(19) 주수		
	송신						
	수신						
	(20) 접지방식						
	시험안테나	(21) 종류	(22) 용량	(23) 개수			
⑤ 전 원 설 비	전원설비	(1) 교류 및 직류의 구별	(2) 개수	(3) 용량	(4) 전압	(5) 상수 및 주파수	
	정류장치	(6) 정류관				(7) 그 밖의 기기	
		명칭		개수			
⑥ 그 밖의 송신 부가 장치	(1) 종류		(2) 방식	(3) 대수	(4) 비고		
⑦ 그 밖의 수신장치	(1) 제조자명		(2) 형식 및 명칭	(3) 적합인증번호	(4) 기기일련번호		
⑧ 특 수 설 비	(1) 제조자명		(2) 형식 및 명칭		(3) 적합인증번호		(4) 기기일련번호
	(5) 전파의 형식과 주파수 범위	(6) 발진 및 변조방식	(7) 펄스폭과 반복주파수	(8) 전력 증폭기	(9) 안테나	(10) 급전선	
⑨ 신청인 제출 도면							
(1) 송수신계통도							
(2) 안테나구성도							
(3) 부지평면도와 지표선상향각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4) 기기배치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5) 전원계통도(지구국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②란

- 가. (1)란: 둘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제1장치, 제2장치 등)로 적습니다. 다만, 각 장치의 공사설계 내용이 같은 것은 그 대수와 제조번호 또는 적합성평가 번호를 적습니다.
- 나. (2)란: 출력단자에서 측정한 정격출력을 전파의 형식별로 적습니다.
- 다. (10)란: 주파수편이 전신인 경우에는 $\pm$ 로 표시하지 않고 편이별(Hz)로 적습니다.
- 라. (11)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라. 둘 이상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치별로 적습니다.

2. ③란

- 가. ②란과 같이 적습니다.
- 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경우에는 (1)란, (7)란, (8)란, (9)란, (10)란만 적으며, (1)란에는 적합성평가 번호를 적습니다.
- 다. (10)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④란

- 가. (2)란: 해상 또는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25MHz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적지 않습니다.
- 나. (3)란: 주지향방향 각도의 북을 0°로 하여 시계방향 각도로 표시합니다.
- 다. (4)·(9)란: 지구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라. (6)란: 절대이득의 경우에는 G_{is}, 상대이득의 경우에는 G_d, 단순 수직안테나에 대한 이득의 경우는 G_r의 기호를 적습니다. (예): 10dB(G_{is})
- 마. (7)란: 안테나 최고부의 높이를 적습니다.
(예) 해발고(m): 해면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높이
지상고(m): 지상에서 안테나 상단까지의 높이
- 바. (8)란: 수신안테나를 송신안테나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으로 적습니다.
- 사. (10)란: 길이는 수평 및 수직(경사)부와 인입부에 대하여 적습니다.
- 아. (13)란: 각 송신기의 출력단자에서 안테나 입력단자까지의 전체 길이를 적고, 분파기 등의 삽입길이는 제외합니다.
- 자. (15)란: 25MHz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급전선의 길이가 1km 이상인 안테나계 또는 25M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테나계만 적습니다.

4. ⑥란

- 가. '그 밖의 송신 부가장치'란 조정장치, 송신단국장치 등을 말합니다.
- 나. (4)란: 빔 급전용 반사판이 주 안테나와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빔 급전용 반사판의 장소를 적습니다.

5. ⑦란: 무선방위측정기 등 그 밖의 수신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⑧란: 레이다, 주파수 측정장치, 자동경보장치,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장치, 전파고도계, 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 및 그 밖의 특수설비 등을 적습니다.

7. 공사설계서에 여백이 부족하거나 특히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